



'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사항'은 **어디**에 **규율**해야 하나요?

다중이용시설등의 공기질 관리법	석면안전관리법	먹는물관리법	식품위생법
<p>제5조 (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)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(이하 "소유자등"이라 한다)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 (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)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3조 (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)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,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(이하 "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야 하고, 이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24조 (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)</p>	<p>제7조 (먹는물 수질 감시원)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, 시·도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, 임명, 직무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32조 (식품위생감시원)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,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·임명·직무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
Point

- 1 환경위생(공기질, 석면, 수질 등)을 담당하는 '업무담당자'와 '교육'에 관한 사항은 모두 '법률'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. ☞ **법률유보원칙**
- 2 하위법령에서는,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. ☞ **법령소관사항원칙**
- 3 '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사항'도, 입법기관인 '국회'에서, '법률'인 학교보건법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임. ☞ **입법원칙, 법령체계정합성의 원리**

기준

- 1 모든 업무의 기본원칙은 법에서 규정한 '기준'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임.
- 2 실내공기질관리는 "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"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(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등).
- 3 학교시설관리도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시설관리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하는 것임 (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2조, 제3조 등).

결과

- 1 학교교사의 내부 환경의 시설·설비기준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**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**에 **적합**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(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·운영 규정 제2조, 제3조).
학교시설·설비기준=학교환경위생기준
- 2 위 규정에 따라 학교 시설관리는 **환경위생기준(=학교시설·설비기준)에 적합하게(=맞게) 유지·관리**하여야 하는 것임.
- 3 따라서, 학교의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는 학교의 시설관리업무이며,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임.

